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가단2018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피고와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7,790,79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90,7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망 D(2020. 5.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2,000,000원을 이율 연 12.4%, 연체이율 15.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2020. 5. 26.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21. 1. 11.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7,790,797원(원금 7,209,473원, 이자 222,695원, 연체이자 358,629원)이다.

나. 부부인 망인과 피고는 2015. 4.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20.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E에게, 2020.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20.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망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인 7,790,7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7,790,79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별지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동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인천 동구 J

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7층 K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6.92㎡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동구 G 대 91,303.6㎡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대지권의 비율 25.45/91,303.6)

끝.